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9

발의연월일: 2024. 6. 20.

발 의 자:이수진・김문수・민병덕

장종태 • 박희승 • 김준혁

이성유 • 박해철 • 장철민

박 정・김정호・송옥주

민형배 · 김용만 · 서영교

정준호 • 한정애 의원

(179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성장 과정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할 국가의 책무,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기본계획 수립 분야를 "복지·교 육·문화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보건의료 분야의 지원 정책 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 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보건의료" 분야를 국가의 지원 정책 등의 대상 범위에 포함하여 아동이 빈곤으로 소외되지 않고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등).

법률 제 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복지·교육·문화"를 "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복지·교육·문화"를 "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복지·교육·문화"를 "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복지·교육·문화"를 "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1호 중 "복지·교육·문화"를 각각 "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빈곤아동이	제1조(목적)
<u>복지·교육·문화</u> 등의 분야에	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
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	
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	
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3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u>.</u>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빈곤아동"이란 생활여건과	3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u>복지·</u>	<u>보건</u>
<u>교육·문화</u> 등의 격차를 해소	의료·복지·교육·문화
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	
한다.	.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	책무) ①
체는 <u>복지·교육·문화</u> 등의	- <u>보건의료・복지・교육・문화</u> -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	
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	
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	

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제5조의2(실태조사) ① 보건복지 기 부장관은 빈곤아동의 <u>복지·교</u> 육·문화 등의 기본적인 욕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 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 기본지부장관은 제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곤아동의 복지·교육·문화 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 빈곤아동의 <u>복지·교육·문</u>
 화 등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
- 2. ~ 4. (생 략)
- ②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실태조사) ①
<u>보건의료</u>
<u>• 복지 • 교육 • 문화</u>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u>보</u>
<u>건의료·복지·교육·문화</u>
,
1 <u>보건의료·복지·</u>
교육 · 문화
 2. ~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